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1. 개정이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제23~27조, 별표 8, 별지 제11·12호)

-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이행기간·폐기 장소·회수·폐기 확인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

나. 공항만 시설 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여행객 등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0)

-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추가함.

라. 공매 등 처분 시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주체를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마.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조정(안 별표 1)

-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및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을 추가·삭제하는 등 정비함.

바. 검역 미완료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 규정 신설(안 별표 5·6)

-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허가 없이 지정된 검역장소 외부로 반출 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추가함.

사. 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 격리재배 중 증식 금지 규정 반영(안 별지 제7호)

-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 조건란에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

아. 위임근거 오류 정정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의6, 제23~28조, 별표 5, 별지 제10호의2 등)

- 현행 조문 체계와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세관”을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폐기처분하여야”를 “폐기처분해야”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의4제1항”을 “법 제12조의4제2항”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
2. 회수 후 폐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발급, 조치 이행기간, 폐기 장소 및 회수
· 폐기의 확인은 각각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각각 “발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식물검역 안내 방법)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안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출
2. 시설에서의 안내 방송
3. 그 밖에 안내문 비치, 배포 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장치하여야”를 각각 “장치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적재하여야”를 “적재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본문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5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되어 검역이 실시된 경우는 검역이 완료(합격 및 처분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을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 제6호 전단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별표 6 제2호8)을 9)로 하고, 같은 호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되어 검역이 실시된 후 검역이 완료(합격 및 처분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		기능정지 15일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	--	-------------	-------------	-------------

별표 8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의2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격리재배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을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제12조의3제2항”을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중 “제16조제2항제1호·제3항”을 “제16조제2항·제3항”으로, 같은 앞쪽 중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12조의3제2항”을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1. 벼, 왕겨, 벳짚과 그 가공품 (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 세계 전 지역 (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벳줄기선충 [<i>Ditylenchus angustus</i>] - 벳이삭미이라병 [<i>Balansia oryzae-sativae</i>]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 (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 지중해과실파리 [<i>Ceratitis capitata</i>] - <i>Ceratitis quinaria</i> - <i>Ceratitis rosa</i> - <i>Bactrocera aquilonis</i> - <i>Bactrocera carambolae</i> - <i>Bactrocera correcta</i> - 오리엔탈과실파리류 [<i>Bactrocera dorsalis</i> species complex] - <i>Bactrocera halfordiae</i> - <i>Bactrocera jarvisi</i> - <i>Bactrocera latifrons</i> - <i>Bactrocera neohumeralis</i> - <i>Bactrocera tau</i> - <i>Bactrocera trivialis</i> - 퀸슬랜드과실파리 [<i>Bactrocera tryoni</i>] - <i>Bactrocera tuberculata</i> - 오이과실파리 [<i>Bactrocera cucurbitae</i>] - 일본과실파리 [<i>Bactrocera tsuneonis</i>] - <i>Bactrocera umbrosa</i> - <i>Bactrocera zonata</i> - 남미과실파리 [<i>Anastrepha fraterculus</i>] - 멕시코과실파리 [<i>Anastrepha ludens</i>] - 카리브과실파리 [<i>Anastrepha suspensa</i>] - <i>Anastrepha serpentina</i> - <i>Anastrepha obliqua</i> - 유럽양벳과실파리 [<i>Rhagoletis cerasi</i>]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참다래 (<i>Actinidia chinensis</i> , <i>Actinidia deliciosa</i>)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다래 (<i>Actinidia arguta</i>)	[뉴질랜드] 전 지역	
	자몽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감귤 레몬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라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유자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i>Rhagoletis cingulata</i> - <i>Rhagoletis completa</i>
단감	[일본] 전 지역	- 서부양벚과실파리
호박	[뉴질랜드] 전 지역	[<i>Rhagoletis indifferens</i>]
두리안	[태국] 전 지역	- <i>Rhagoletis fausta</i>
양벚 딸기	[일본] 전 지역	- 사과과실파리 [<i>Rhagoletis pomonella</i>]
토마토	[일본] 요나구니섬을 제외한 전 지역	- <i>Rhagoletis suavis</i> - 고추과실파리
아보카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i>Zonosemata electa</i>] - <i>Anastrepha distincta</i> - <i>Anastrepha pseudoparallela</i> - <i>Anastrepha striata</i>
석류	[이란] 마잔다란(Mazandaran)주, 파르스(Fars)주(Neyriz시 제외), 시스탄-발루치스탄(Sistan&Baluchistan)주를 제외한 전 지역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	- <i>Bactrocera cucumis</i> - <i>Bactrocera frauenfeldi</i> - <i>Bactrocera kraussi</i> - <i>Bactrocera murrayi</i> - <i>Bactrocera opiliae</i>
월귤	[네팔] 전 지역 [인도네시아] 전 지역	- 코드린나방 [<i>Cydia pomonella</i>]
멜론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 유사코드린나방 [<i>Cryptophlebia leucotreta</i>]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i>Cydia funebrana</i>]
참외	[일본] 전 지역	- 만주애기잎말이나방 [<i>Grapholita inopinata</i>]
파인애플	아래 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 아시아: 이스라엘 - 아프리카: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위니옹,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인트헬레나,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i>Grapholita prunivora</i>] - <i>Grapholita prunivorana</i> - 북송아뽕나방 [<i>Anarsia lineatella</i>] - 자두바구미 [<i>Conotrachelus nenuphar</i>] - <i>Carpomya pardalina</i>

2-2. 꽃감	- 아시아: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 북아메리카: 미국(하와이주) -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 오세아니아·태평양지역: 나우루, 오스트레일리아, 크리스마스섬	- 오리엔탈과실파리류 [<i>Bactrocera dorsalis</i> species complex]
3. 호두나무의 열매 [탈각(脫殼)된 것은 제외한다]	- 아시아: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파키스탄 - 유럽: 전 지역(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포함한다) - 아프리카: 전 지역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페루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코드린나방 [<i>Cydia pomonella</i>]
4. 감자·토마토 종자	-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히마찰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지역만 해당한다), 중국[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칭하이(青海)성만 해당한다] - 유럽: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지역만 해당한다)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집트 - 북아메리카: 미국(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오, 위스콘신, 와이오밍주만 해당한다) - 중·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페루	- 감자갈썩병 [<i>Pospiviroid fusituberis</i> (potato spindle tuber viroid)]

5. 고구마속·나팔꽃속 ·메꽃속·마속·새삼 속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 아시아: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북위 30° 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만 해당한다),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페스카도레스 제도, 필리핀 - 아프리카: 전 지역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 중·남아메리카: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서인도제도, 수리남,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 오세아니아·태평양지역: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코코스 제도, 크리스마스섬, 파푸아뉴기니, 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 - 영국령 인도양지역(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개미바구미 [<i>Cylas formicarius</i>] - 고구마바구미 [<i>Euscepes postfasciatus</i>]								
6. 보리속(<i>Hordeum</i> spp.) · 밀속(<i>Triticum</i> spp.) · 호밀속·개밀속 및 라이밀속(<i>Triticosecale</i>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검역본부 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시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 유럽: 전 지역(라트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포함한다) -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헤시안파리 [<i>Mayetiola destructor</i>]								
7.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table><tr><td colspan="2">-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td></tr><tr><td>품목별</td><td>수입 허용지역</td></tr><tr><td>가지과 식물의 생경엽</td><td>[일본] 규슈, 홋카이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td></tr><tr><td>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td><td>[일본] 규슈, 홋카이도, 혼슈(아오모리현과 미에현만 해당한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빙엄(Bingham) 및 본네빌(Bonneville) 카운티만 해당한다],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td></tr></table>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품목별	수입 허용지역	가지과 식물의 생경엽	[일본] 규슈, 홋카이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일본] 규슈, 홋카이도, 혼슈(아오모리현과 미에현만 해당한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빙엄(Bingham) 및 본네빌(Bonneville) 카운티만 해당한다],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 감자암종병 [<i>Synchytrium endobioticum</i>] - 감자갈죽병 [<i>Pospiviroid fusituberis</i> (potato spindle tuber viroid)] - 감자씨스트선충 [<i>Globodera rostochiensis</i>] - 감자흰씨스트선충 [<i>Globodera pallida</i>] - 콜로라도잎벌레 [<i>Leptinotarsa decemlineata</i>] - 담배노균병 [<i>Peronospora tabacina</i>]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품목별	수입 허용지역									
가지과 식물의 생경엽	[일본] 규슈, 홋카이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일본] 규슈, 홋카이도, 혼슈(아오모리현과 미에현만 해당한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빙엄(Bingham) 및 본네빌(Bonneville) 카운티만 해당한다],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주를 제외한 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를 제외한 전 지역		
8.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	- 아시아: 대만,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예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 유럽: 전 지역(리투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포함한다) - 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푸에르토리코 -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 담배노균병 [<i>Peronospora tabacina</i>]		
9. 감자·토마토·고추(파프리카)·타마릴로(<i>Solanum betaceum</i>)·케이프구스베리(<i>Physalis peruviana</i>)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및 재식용 묘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주만 해당한다), 캐나다(앨버타주만 해당한다) - 중·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i>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i>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i>Bactericera cockerelli</i>)		
10. 당근·샐러리·파스닙·파슬리의 생경엽과 재식용 묘	- 유럽: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아시아: 이스라엘 - 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 <i>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i>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i>Trioza apicalis</i>, <i>Bactericera trigonica</i>)		
11. 배나무아과·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복숭아속 식물은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 과수화상병 [<i>Erwinia amylovora</i>] - 사과빛자루병 [<i>Candidatus Phytoplasma mali</i>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 자두곰보병 [<i>Potyvirus plumipoxi</i>]		
	<table><tr><th>품목별</th><th>수입허용지역</th></tr><tr><td>배나무아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td><td>[일본] 전 지역 [대만] 전 지역</td></tr></table>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배나무아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	[일본] 전 지역 [대만] 전 지역			

	복숭아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	[일본]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현	(plum pox virus)]
11-2. 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 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 아시아: 레바논, 시리아, 아르메니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 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버뮤다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과수화상병 [<i>Erwinia amylovora</i>]	
12. 운향과(<i>Rutaceae</i>)· 새삼속(<i>Cuscuta</i> spp.) 및 잭푸르트(<i>Artocarpus heterophyllus</i>)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 및 신선라임잎	– 아시아: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예멘, 이란, 인도, 인도 네시아, 일본(오키나와현의 북위 27° 58’ 이남 지역 및 키카이섬만 해당한다),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 화국, 레위니옹,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부룬디, 소말리아, 앙골라 (금지 식물 중 <i>Artocarpus heterophyllus</i>는 제외한다),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탄자니아, 튀니지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주만 해당한다), – 중·남아메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버진아일 랜드(미국령),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 오세아니아·태평양지역: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 감귤그린병 [Citrus huanglongbing (greening) disease]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i>Diaphorina citri</i>, <i>Trioza erytreae</i>)	

13. 포도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	- 아시아: 대만, 이란, 인도, 튀르키예 - 유럽: 독일,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브라가(Braga), 비아나카스텔루(Viana do Castelo), 빌라 헤알(Vila Real) 지구만 해당한다], 프랑스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 포도황화병 [<i>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i>] - 포도피어슨병 [<i>Xylella fastidiosa</i>]
14. 아보카도·파인애플 ·여지· <i>Indigofera hirsuta</i> ·테다소나무 · <i>Pinus elliottii</i> ·강낭콩·오크라·수박·무·여주·고추·토마토·호박·멜론·부추·치자·칸나·차나무·커피·생강·알팔파·후추·고구마·사탕수수·대두·옥수수·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i>Cercestis mirabilis</i> · <i>Rhaphidophora decursiva</i> ·빈랑·코코넛야자(씨난 묘를 포함한다)· <i>Curcuma longa</i> ·당근·까마중·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운향과· <i>Calathea</i> spp.·근대속· <i>Dioscorea</i> spp.·배나무속· <i>Maranta</i> 속· <i>Stromanthe</i> 속· <i>Ctenanthe</i> 속· <i>Persea</i> 속· <i>Strelitzia</i> 속·자스민속· <i>Rhapis</i> 속· <i>Heliconia</i> 속· <i>Agathis dammara</i> · <i>Piper betle</i> · <i>Allamanda</i> 속· <i>Annythium zipperianum</i> · <i>Calloopsis volkensii</i>	- 아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예멘,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아프리카: 전 지역 - 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전 지역(칠레는 제외한다) - 오세아니아·태평양지역: 괌, 노퍽아일랜드(호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우에(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미국령), 사모아독립국, 솔로몬제도, 오스트레일리아(타즈마니아주는 제외한다), 쿡제도(뉴질랜드),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폴리네시아, 피지, 하와이제도	- 감귤뿌리썩이선충 [<i>Radopholus citrophilus</i>]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i>Radopholus similis</i>]

• <i>Chlorospatha</i>속 • <i>Chamaedorea</i>속 • <i>Staurogyne</i>속 나사말(<i>Vallisneria</i>)속 • <i>Livistona</i>속 • <i>Ficus benamina</i> - Polyscias속 <i>Scindapsus</i>속 <i>Licuala</i>속 • <i>Epipremnum</i>속 <i>Johannesteijsmannia</i>속 • <i>Homalomena</i>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안스름속 식물의 삽수, <i>Philodendron</i>속 • <i>Monstera</i>속 식물의 삽수·접수 및 생식물의 지하부, <i>Anubias</i>속 • <i>Bucephalandra</i>속 <i>Cyperus</i>속(잎·줄기를 포함한 생식물 전체)		
15. 소나무속·잎갈 나무속·개잎갈나무속 식물의 묘목류·목재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	- 아시아: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 유럽: 스페인 [갈리시아(Galicia),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 안달루시아(Andalucia),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주만 해당한다], 포르투갈 -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소나무재선충 [<i>Bursaphelenchus xylophilus</i>]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i>Monochamus alternatus</i>, <i>Monochamus carolinensis</i>, <i>Monochamus galloprovincialis</i>, <i>Monochamus mutator</i>, <i>Monochamus saltuarius</i>, <i>Monochamus scutellatus</i>, <i>Monochamus titillator</i>) - 소나무종유석병 [<i>Gonartium coleosporioides</i>]
16. <i>Acer macrophyllum</i>, <i>Aesculus californica</i>, <i>Arbutus menziesii</i>, <i>Arctostaphylos manzanita</i>, <i>Calluna vulgaris</i>, <i>Camellia</i> spp., <i>Fraxinus excelsior</i>, <i>Griselinia littoralis</i>, <i>Gaultheria procumbens</i>, <i>Hamamelis virginiana</i>, <i>Heteromeles arbutifolia</i>,	- 아시아: 베트남, 일본(규슈, 시코쿠) -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 북아메리카: 미국[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Alameda), 콘트라코스타(Contra Costa), 델노르트(Del Norte), 험볼트(Humboldt), 레이크(Lake), 마린(Marin), 멘도시노(Mendocino), 몬트레이(Monterey), 나파(Nap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 참나무역병 [<i>Phytophthora ramorum</i>]

<i>Lithocarpus densiflorus</i> , <i>Larix kaempferi</i> , <i>Lonicera hispidula</i> , <i>Mianthemum racemosum</i> <i>(Smilacina racemosa)</i> , <i>Photinia fraseri</i> , <i>Pieris formosa</i> , <i>Pieris japonica</i> , <i>P. formosa</i> × <i>P.japonica</i> , <i>P.floribunda</i> × <i>P.japonica</i> , <i>Pseudotsuga menziesii</i> var. <i>menziesii</i> , <i>Quercus agrifolia</i> , <i>Quercus cerris</i> , <i>Quercus chrysolepis</i> , <i>Quercus falcata</i> , <i>Quercus ilex</i> , <i>Quercus</i> <i>kelloggii</i> , <i>Quercus</i> <i>parvula</i> var. <i>shrevei</i> , <i>Frangula californica</i> , <i>Rhododendron</i> spp., <i>Rosa gymnocarpa</i> , <i>Sequoia sempervirens</i> , <i>Trientalis latifolia</i> , <i>Umbellularia californica</i> , <i>Vaccinium ovatum</i> , <i>Viburnum</i> spp., <i>Acer pseudoplatanus</i> , <i>Aesculus hippocastanum</i> <i>Adiantum aleuticum</i> , <i>Adiantum jordanii</i> , <i>Castanea sativa</i> , <i>Fagus sylvatica</i> , <i>Frangula purshiana</i> <i>(Rhamnus purshiana)</i> , <i>Kalmia</i> spp., <i>Laurus nobilis</i> , <i>Magnolia doltsopa</i> , <i>Parrotia persica</i> , <i>Pteris</i> spp., <i>Salix caprea</i> , <i>Syringa vulgaris</i> , <i>Taxus baccata</i> , <i>Cinnamomum camphora</i>	샌마테오 (San Mateo), 산타클라라 (Santa Clara), 산타크루스 (Santa Cruz), 솔라노 (Solano), 소노마 (Sonoma), 트리니티 (Trinity) 카운티 및 오리건주 커리 (Curry) 카운티만 해당한다] –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	---	--

의 묘목(대목 포함) ·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과 나무 껍질이 붙어 있는 목재류		
17. 장미속 식물 (<i>Rosa</i> spp.) (꽃 또는 꽃봉오리가 부착된 경우만 해당 한다)	- 아시아: 이스라엘 - 아프리카: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위니옹,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인트헬레나,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유사코드린나방 [<i>Cryptophlebia leucotreta</i>]

※ 비고

1. 위 표의 수입 금지 식물 중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의 금지지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세관</u> 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4. <u>세관 등 국가기관</u>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u>하여야</u> 한다.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 ----- ----- ----- ----- ----- ----- ----- ----- ----- ----- <u>해야</u>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② ----- -----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
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
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
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
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해야 ---.

③ ----- 법 제12조의4
제2항 -----

--- 게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3
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

2. 회수 후 폐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발급, 조치 이행기간, 폐기 장소
및 회수·폐기의 확인은 각각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회수·소독·폐기·반송
·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① 식
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
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
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
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소독
·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
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
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
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

제23조(회수·소독·폐기·반송
·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① -

-----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

----- 발급해야 -----.

② -----

----- 발급해야 -----.

제24조(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①

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소독 · 폐기의 장소)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 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

소는 별표 8과 같다.

제26조(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

제26조(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 -----

-----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

--- 확인해야 ----. -----

-----.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

-----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소독·폐기 비용의 청구)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발급해야 -----

제28조(소독·폐기 비용의 청구)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

<신 설>

[별표 5]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제20조제4항 관련)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2의2. ~ 2의4. (생략)
3. 원목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소독이 끝난 원목과 소독이 끝나지 아니한 원목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식물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장치하되 수입일, 수입자, 화물관리번호,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2(식물검역 안내 방법)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안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출
2. 시설에서의 안내 방송
3. 그 밖에 안내문 비치, 배포 등

[별표 5]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제20조제4항 관련)

1. -----
----- 설치해야 -----.
2. -----

----- 장치해야 -----.
- 장치해야 -----.
- 2의2. ~ 2의4. (현행과 같음)
3. -----

----- 않은 -----
-- 적재해야 -----.
4. -----

----- 부착해야 -----.

컨테이너에 넣어져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 3℃ 이하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 중인 식물 및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되어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신설>

6. 검역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원목의 검역장소는 수시로 지반과 배수구를 정비하고 나무껍질 등 잔재물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소

-- 그러지 않다.

5. -----

---- 않도록 -----

-- 해야 ----. -----

----- 않도
록 ----- 그러지
않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 5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되어 검역이 실시된 경우는 검역이 완료(합격 및 처분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을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 유지
해야 ----. -----

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藏置)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물품은 제외한다).

8. 검역장소지정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규격
과 원목의 구분 적재 방법, 식물
잔재물 및 검역장소의 소독 방
법 및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
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관련)

----- 해야 -----.

7. 알고

해야

8. -----

-- 신고해야 ----.

9. _____

조치해야 _____
 _____.

[별표 6]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생 략) 나.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1) ~ 7) (생 략) <신 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8)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1개 월 이상 검역 장소에 장치 된 식물에 대 한 목록을 제 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 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다. ~ 라. (생 략)		기능 정지 15일	기능 정지 1개월	기능 정지 3개월

[별표 8]

소독·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

1. (생 략)

2. 폐기 장소

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1) ~ 7) (현행과 같음) 8) 식물검역대 상물품이 검 역장소에 반 입되어 검역 이 실시된 후 검역이 완료 (합격 및 처분 완료)되기 전 까지 해당 물 품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 9)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1개 월 이상 검역 장소에 장치 된 식물에 대 한 목록을 제 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 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다. ~ 라. (현행과 같음)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기능 정지 15일	기능 정지 1개월	기능 정지 3개월
		기능 정지 15일	기능 정지 1개월	기능 정지 3개월

[별표 8]

소독·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폐기 장소

가. -----

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생략)				
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경고	등록 취소	
다. ~ 사. (생략)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

----- 그렇지 않다.

1) ~ 5) (현행과 같음)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현행과 같음)				
나. <u>정당한 사유 없이</u>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경고	등록 취소	
다. ~ 사.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격리재배명령서				
※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격리재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명자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격리재배지	보관장소	품목명	수량	격리재배 기간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재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격리재배 조건									
1.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세관이 수입신고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 장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옮겨야 합니다. 2. 격리재배시설의 보안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검역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4. 격리재배 대상 식물에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검역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에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신 설>									
유의사항									
1. 위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자(수입자·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는 「식물방역법」 제47조의2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 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3. "소유자"는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물주를 말하며, 「상법」 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명령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대표자 또는 소속 검역관에 게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격리재배명령서				
※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격리재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명자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격리재배지	보관장소	품목명	수량	격리재배 기간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재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격리재배 조건									
1.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세관이 수입신고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 장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옮겨야 합니다. 2. 격리재배시설의 보안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검역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4. 격리재배 대상 식물에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검역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에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5. 격리재배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위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자(수입자·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는 「식물방역법」 제47조의2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 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3. "소유자"는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물주를 말하며, 「상법」 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명령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대표자 또는 소속 검역관에 게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No.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 Order for recovery · disinfection · destruction · return or taking out			
소유자 Possesso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품목명 Item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물품 소재지 Location of consignment			
실시 장소 Point of enforcement			
실시 기간 Period of enforcement			
실시 방법 Method of enforcement			
실시 사유 Reason of enforcement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I hereby order you to (recovery, disinfect, destruct, return or take out)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2, 10-6, 12(2)-3, 12(3)-2, 16-1, 16-3, 17(2)-2, 19(2)-4, 27-1 and 27(2)-4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별지 제11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No.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 Order for recovery · disinfection · destruction · return or taking out			
소유자 Possesso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품목명 Item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물품 소재지 Location of consignment			
실시 장소 Point of enforcement			
실시 기간 Period of enforcement			
실시 방법 Method of enforcement			
실시 사유 Reason of enforcement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u>제13조의2제2항</u>,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I hereby order you to (recovery, disinfect, destruct, return or take out)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2, 10-6, 12(2)-3, 12(3)-2, <u>13(2)-2</u>, 16-1, 16-3, 17(2)-2, 19(2)-4, 27-1 and 27(2)-4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별지 제11호의2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제 호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				
소	성 명		생년 월일	
유	주 소			
자				
대	성 명		생년 월일	
리	주 소			
인				
품 목 명	수 량	비 고		
격리재배지				
실시 장소				
실시 기간				
실시 방법				
실시 사유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제1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뒤쪽)

유의사항
1.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3. 폐기대상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폐기대상품"임을 표기할 것
4. 소독 또는 폐기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할 것

[별지 제11호의2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제 호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				
소	성 명		생년 월일	
유	주 소			
자				
대	성 명		생년 월일	
리	주 소			
인				
품 목 명	수 량	비 고		
격리재배지				
실시 장소				
실시 기간				
실시 방법				
실시 사유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뒤쪽)

유의사항
1.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3. 폐기대상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폐기대상품"임을 표기할 것
4. 소독 또는 폐기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No.			
처분 증명서 Certificate for results of disposal			
소유자 Possesso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운송수단 Means of conveyance			선(기)명 Name of vessel or aircraft
품목명 Item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처분일 Date of disposal		처분 방법 Disposal method	
처분 사유 Reason of disposal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item has been disposed as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3)-2, 10-6, 12(2)-3, 12(3)-2, 16-1 to 16-4, 17(2)-2, 19(2)-4, 27-1, 27-2 and 27(2)-4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7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별지 제12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No.			
처분 증명서 Certificate for results of disposal			
소유자 Possesso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운송수단 Means of conveyance			선(기)명 Name of vessel or aircraft
품목명 Item		수량 Quantity	비고 Remarks
처분일 Date of disposal		처분 방법 Disposal method	
처분 사유 Reason of disposal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u>제13조의2제2항</u>,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item has been disposed as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3)-2, 10-6, 12(2)-3, 12(3)-2, <u>13(3)-2</u>, 16-1 to 16-4, 17(2)-2, 19(2)-4, 27-1, 27-2 and 27(2)-4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7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